

# 내포문화사업소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

## 《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20. 6. 24.(수) ~ 6. 26.(금)
- 감사반 : 5명(감사팀장외 4명)
- 감사범위 : 2017년 9월 이후 사업소 업무 전반
- 중점감사내용
  - 출장 및 연가, 공사, 초과근무 등 복무 위반 행위 점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지연·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행정 집중점검

## ■ 감사결과

(단위 : 건, 천원)

일련 번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기타	계	지급	회수	부과
계		13건	7	6	-	176	-	176	-
1	내포문화	광고 업무 규정 준수 소홀		◎	-	-	-	-	-
2	내포문화	연체료 지출 부적정	◎	-	-	59	-	59	-
3	내포문화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	-	-	-	-	-
4	내포문화	수입인지·증지 매입 부적정	◎	-	-	-	-	-	-
5	내포문화	세출예산 지출과목 부적정	-	◎	-	-	-	-	-
6	내포문화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 소극행정	-	◎	-	-	-	-	-
7	내포문화	공용차량 운행일지 등 관리소홀	◎	-	-	-	-	-	-
8	내포문화	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부적정	-	◎	-	-	-	-	-
9	내포문화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	◎	-	-	-	-	-
10	신도시	건설공사 사후정산 소홀	◎	-	-	-	-	-	-
11	신도시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	-	-	-	-	-
12	내포문화	급량비 지급관련 지출 증빙서류 미비	◎	-	-	-	-	-	-
13	내포문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과다지급	◎	-	-	117	-	117	-

# □ 주요지적사례

## ① 광고 업무 규정 준수 소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광고의뢰)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언론사와 광고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 ② 연체료 지출 부적정

-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 따르면 회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때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납부 기한 내 정상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료를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 ③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의거 건설공사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대금 공급가액의 2.5/100, 수리·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15건의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계약자가 채권매입필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 ④ 수입인지 및 예산군 수입증지 매입 부적정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거 기재금액이 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수입인지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요율)에 의거 수의계약 견적서(예정가격 1,000만원 이상)에 예산군 수입증지(10,000원)를 징수해야 한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15건의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계약자가 채권매입필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 ⑤ 세출예산 지출과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 ⑥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 소극행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5건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최소 1일에서 최대 9일까지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7 공용차량 운행일지 등 관리소홀

-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사용량과 잔고량 등을 기록해야 하며 차량운행일지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공용차량의 차량배차신청 및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상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8 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 연말에 물품을 몰아서 구입하는 등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9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10 건설공사 사후정산 소홀

-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하게 적어야 하며
  -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한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사후정산 대상 '환경보전비' 등을 설계변경 시 전액 감액한 사실이 있으며
  - 총 8건의 공사에 대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을 정산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후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11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공사와 관련된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른 여비,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피복비 등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당해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업무용 소모품 등 관서운영비적 경비를 시설부대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12 급량비 지급관련 지출증빙서류 미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량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 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비용이며
  -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급량비를 지출함에 있어 초과근무자 내역과 각 업체별 거래내역 등을 확인 및 보관해야 함에도 관련 증빙서류 없이 지출결의서와 현금영수증만 첨부하여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13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과다지급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하고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 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미달 근무일수를 관계법령에 따라 감액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